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 〉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8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와 관련 문제	3
3.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9
4.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2025. 3. 21.
3. 회 부 일: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범죄”란 <u>보호자</u> 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 <u>보호자</u> <u>를 포함한 성인</u> ----- ----- -----.
가. ~ 하. (생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4의2. ~ 11. (생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2.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와 관련 문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음(제2조제4호).¹⁾²⁾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대)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 아동학대처벌법은 「형법」의 여러 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으나 살인의 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 보호자 및 아동학대 등 용어의 의미는 「아동복지법」에서와 같음(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³⁾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고, 보호자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며,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유기·방임 행위나 성인의 폭력·가혹행위 등임(제3조제1호·제3호·제7호).⁴⁾

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3호 단서는 동법상 ‘아동학대’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한 사실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였음. 제21대국회 제410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11. 15.), 9-13.

4)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려면 ‘보호자’에 의한 범죄여야 하고,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범죄에서 행위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동 보호자의 범죄가 지니는 강한 불법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원가정(原家庭) 보호’를 고려할 필요성 등 아동학대범죄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⁵⁾

□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에 따라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이 인정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보호자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아동학대처벌법은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로 응급 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아동학대처벌법은 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도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사건 처리, 조건부 기소유예 등 그 혐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

구 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요건	◦ 아동학대범죄 진행 중 또는 급박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 긴급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조사·심리·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
절차	◦ 사법경찰관리등 조치	◦ 사법경찰관 조치	◦ (사법경찰관 등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내용	◦ 아동학대범죄 제지, 아동 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중 일부를 인용)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등 행사 제한,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 구금 등
위반 시 제재	-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징역(2년 이하)/벌금(2천만원 이하)/구류

* 일정한 유형의 조치에 한하며, 위반 시 제재와 별도로 업무수행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존재(\$61)

□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 개념을 인용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에서도 보호자 아닌 사람이 제외되는 문제도 존재함.

○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법률로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동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정의하고(동법 제3조제7호의2),⁶⁾ 그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동법 제29조의3).⁷⁾

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상 살인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호자 아닌 성인의 범죄는 살인이 아닌 한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해당 범죄의 행위자는 아동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됨.⁸⁾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⑦ (생략)

- 8)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같은 법(註: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일 것을 전제로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의 1의 보호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지 않음. 다만, 아동학대범죄행위자들의 취업제한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 아닌 사람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0784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각 유형의 범죄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제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대표발의	소관 위원회	주요 내용
2207478	김 윤	보건복지위원회	◦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여,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피해아동의 ‘보호자’에서 ‘보호자 아닌 성인’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동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나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등 관련 규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됨.

구 분	적용 대상	현 행	개정안	비 고
보안처분 ¹⁾ 병과	아동학대범죄	x*	○	
보호조치 ²⁾ 부과	아동학대범죄	x*	○	
취업제한 ³⁾	아동학대관련범죄	×	○	아동복지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

주: 1) 아동학대처벌법의 수감명령, 이수명령 등(아동학대처벌법 §8)

2)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아동학대처벌법 §12, §13 및 §19 등)

3) 아동복지법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아동복지법 §29-3)

- 이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가중적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보호자 아닌 성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⁹⁾

9)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보호자 아닌 성인에 대하여 보안 처분이나 보호조치 등을 병과 또는 부과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에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원가정 보호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현행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자 접근 금지 등으로(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¹⁰⁾

10)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 ⑨ (생략)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주로 피해아동과 계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인 보호자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 아동과 계속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포함됨.

-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 아닌 성인에까지 확대할 경우 성인의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는 대부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게 될 것임.
-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외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경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보호자 아닌 성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취업제한의 적용범위 확대라는 점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방법이 될 수 있음.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무부는, 개정안이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과 보호자에 의한 학대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려는 아동학대처벌법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법제가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원화된 취지는,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 중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그 발견이 어렵고, 사건 처리 시 아동의 복지, 원가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051

